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4 (25 -29 Sep. 2017)

No. IMO-0012-2017

BRIEFING STATUS

☒ *Flash*

Subject: Newsflash of III 4

제4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4차)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7년 9월 25일에서 29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II 4차 주요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의제 5)

- 제30차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하여 2011 항만국통제 절차서(Res.A.1052(27)) 개정안의 초안이 완료되었으며, 동 결의서는 선박의 검사, 결함사항의 식별, 선박의 장비 및 선원에 대한 검사시의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임. 이와 관련하여, 동 지침서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 사이의 경계벽의 보존방열성과 관련하여, 여객선에게만 국한된 구조적 보호수단에 대한 문의는 주관청으로 해야 하며, PSCO는 본선에 제공된 장비의 유효성에 대한 검사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모든 선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수동조작 콜 포인트 설치 및 외부 탈출로의 최소 폭과 관련하여, 주관청이 인정한 경우 PSCO는 동 사항을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마련함
- 30차 총회의 채택을 위하여 선원의 자격증명, 휴식시간 및 기국의 최소승무원 정원 요구사항에 대한 PSC 지침서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동 지침은 2011 항만국통제 절차서(Res.A.1052(27)) 개정안의 부록 11로 추가됨
- ECDIS
 - NCSR 3차는 ECDIS의 S-52, S-57, S-63 및 S-64 기준의 시험 및 최신화 기한을 2016년 9월 1일에서 2017년 9월 1일로 연장함에 합의한 바 있음. 하지만, 일부 ECDIS 제조자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신화를 수행할 수 없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4 (25 -29 Sep. 2017)

No. IMO-0012-2017

BRIEFING STATUS

☒ *Flash*

음이 식별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III 4차는 ECDIS의 최신화에 관련된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ECDIS 최신화 적용일자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PSCO는 이에 관련된 문서가 기국 주관청으로부터 선박에게 발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동 문서가 없는 경우 PSCO는 기국주관청과 상의해야 함을 언급하는 III.2/Circ 문서를 발행하였음

2. HSSC에 따른 검사지침 최신화 및 PSC 활동과 지침의 조화를 위한 조치

(의제 8)

○ HSSC 검사지침 최신화

- III 4차는 HSSC 검사지침 및 의무규정 목록에 관한 통신작업반의 결과보고서를 고려하였으며, 다음의 검사지침을 반영하여 30차 총회의 채택을 위한 2017 HSSC 검사지침 초안을 완료함:

- i. IGF Code 검사지침;
- ii. BWM 협약 검사지침;
- iii. III Code의 협약상 의무 규정 목록 개정 및 최신화; 및
- iv. HSSC에 따른 검사지침(Res.A.1104(29))의 개정

○ 비자향 무인바지선박에 대한 MARPOL 협약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 면제

- III 3차는 MEPC 69차에서 합의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자향 무인바지선박에 대한 MARPOL 협약의 면제에 관련된 협약개정안 및 관련 지침서를 완료하였음:

 - i. 어떠한 면제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ii. 면제증서는 MARPOL 협약의 개별 부속서 별로 발행되어야 함;
 - iii. MARPOL Annex IV 또한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에 포함되어야 함;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4 (25 -29 Sep. 2017)

No. IMO-0012-2017

BRIEFING STATUS

☒ *Flash*

iv. 기름기록부에 관한 MARPOL Annex I의 17.1 규칙에 관련된 참조사항은 유지되어야 함; 및

v. 지침서가 승인되고 나면, 이는 회람문서(Circular) 형태로 발행되어야 함
- 이와 관련된 추가논의가 III 4차에서 있었으나, 제출된 문서가 없었음을 고려하여 차기 III 5차 회의에서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함

○ 수중검사 중의 타두재 간극측정

- 현행의 HSSC 검사지침에 따라, 여객선의 경우 정기검사 시의 타두재 간극측정은 수중검사에서는 수행될 필요가 없는 반면, 타 화물선은 수중검사 중 타두재 간극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 III 4차는 화물선의 수중검사 중의 타두재 간극측정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면서 두 요건을 일치시키자는 제안사항을 고려하였으나, 수중검사 수행에 대한 안전 및 수중검사가 불가능한 디자인을 지닌 선박들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었음을 고려하여 SDC 5차 전문위원회의 추가 기술검토를 요청하기로 합의함

○ SOLAS 개정협약의 조기이행

- III 4차는 개정협약의 조기이행을 언급하기 위한 새로운 MSC 회람문서 (MSC.7)를 GISIS 상에 제공하는 것에 합의함

○ BWM 협약의 검사지침

- III 4차는 BWMS의 Commissioning 단계에서 D-2 성능기준의 만족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검사항목을 HSSC 검사지침에 추가하였으나, BWMS의 Commissioning과 연계한 D-2 성능기준의 만족유무에 대한 상세한 측면이 언급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MEPC로 추가검토를 요청하기로 합의함
- BWM.2/Circ.7에 따라 BWM 협약의 최초검사를 미리 수행한 선박들에게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4 (25 -29 Sep. 2017)

No. IMO-0012-2017

BRIEFING STATUS

☒ *Flash*

상기의 개별 BWMS의 D-2 성능기준 만족유무에 대한 검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함

- 현재 3개의 BWMS 형식승인 기준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버전을 언급하고 있는 검사항목(BI 1.1.2.4)에 'applicable'을 추가하여 선박이 건조된 시점에 적용되는 형식승인이 기준이 언급될 수 있도록 관련문구를 수정함

3. 항만수용시설의 부적절성 (의제 3)

○ 항만수용시설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검토

- III 4차는 해양환경으로 유해한 화물잔류물 및 그러한 잔류물을 포함한 화물창 세정수를 수용할 수 있는 항만수용시설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및 수용시설의 적절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사항들을 고려하였음
- 논의 후, 회원국들에게 MARPOL 협약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수용시설의 부적절성을 보고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사무국에게 항만수용시설에 대한 GISIS 모듈 개선을 위한 과정을 차기 III 5차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사고 조사 (의제 4)

○ 사고조사 및 해양안전조사 보고서의 분석에서 얻은 교훈

- III 4차는 사고조사에 관한 통신작업반의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해양안전조사 보고서의 분석에서 얻은 교훈의 초안을 승인하였음
- 공식안전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에서 사고 및 사건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III 4차는 공식안전평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사고 및 사건에 관한 GISIS Module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GISIS의 MCI(Marine Casualty Investigation) Module은 공식안전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선박사고에 대한 상업적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4 (25 -29 Sep. 2017)

No. IMO-0012-2017

BRIEFING STATUS

☒ *Flash*

고려하여, 검증되지 않은 자료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끝-

P.I.C:

김회준 / 책임검사원

협약법제팀

Tel: 070 8799 8330

Fax: 070 8799 8339

E-mail: convention@krs.co.kr

협약법제팀장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